

「무선국검사 업무용 안전장구류 구매」 과업지시서

2025. 04.



전파기반본부 검사관리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18)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I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도 무선국검사 업무용 안전장구류 구매

□ 사업금액 : 금 24,444,750원(금 이천사백사십사만사천칠백오십원)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추진배경 및 목적

○ 무선국 검사 현장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장구류 구입

□ 구매품목 및 수량

No	품 목	수 량(개)	비 고
1	전체식 안전벨트	69	
2	안전 조끼	233	로고 인쇄
3	안전모	48	로고 인쇄
4	안전각반	203	
5	쿨토시	203	
합 계		756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전조끼(4618150701), 안전용 덧옷(46181528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II 규격서

제품명	규격	샘플사진	수량(개)
① 전체식 안전벨트	(종 류) 전체식 안전벨트 (인 증) 고용노동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 기준을 만족할 것 (재 질) 고리를 제외한 폴리에스터 100% 사용 (기 타) M,L 사이즈 선택 가능할 것, 포켓이 1개 이상 있을 것, 재귀 반사띠가 있어 야간에 식별 용이할 것		69
② 안전 조끼 (로고포함)	(종 류) 안전 조끼 (소 재) 겉면 폴리에스터 100% (색 상) F.YELLOW(형광 노랑) (기 타) EN ISO20471(유럽 국제안전 규격)에 적합한 고휘도 야간식별 반사띠를 사용하여 야간에도 식별 용이, 옆선 벨크로를 통해 사이즈조절기능, 후면 하단 KCA로고 실크 인쇄, 생활방수	 	233
③ 안전모 (로고포함)	(종 류) 투구형 안전모(등급 : ABE, 재질 : ABS) (인 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必 (무 게) 450g 이하 (색 상) 흰색 (기 타) 자동내피 및 원터치 턱끈 및 좌우 "회사명", 전면"회사 로고"실크인쇄	 	48
④ 안전 각반	(품 명) 안전각반 (색 상) 네이비 (사이즈) Free (소 재) 나일론 70%, 스판 30%		203
⑤ 쿨토시	(품 명) 아이스 쿨토시 (소 재) 나일론 90%, 폴리 10% (색 상) 블랙 또는 회색 (기 타) 신축성이 좋은 원단, 밀착감이 좋으며, UV 차단 및 GT-X-ICE 쿨링 기능, 무봉제 방식 제작, 으로 흡습 속건 냉감 기능		203

III 공급 및 납품에 관한 조건

□ 공급 및 납품에 관한 조건

- 공급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으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은 납품할 수 있다.
- 공급 물품의 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공급자는 물품 수령 후 훼손되지 않은 새상품(태그나 상표 유지)인 상태로 14일 이내 물품교환 등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정부 물품조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납품 후 발주부서와 공동으로 물품검수를 받아야하며, 검수가 완료된 물품은 발주부사가 지정하는 본사, 9개 지방본부 및 5개 지사에 배송하여야 한다.
- 납품방법
 - 납품 방법 : 분할납품 가능

* 물품 납품 시 운반과정에서 전도·부딪힘 사고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납품 및 검수장소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사관리팀

□ 문의처

- 담당자 : 전파기반본부 검사관리팀 김승준 과장
 - 내선 : 061-350-1438 / e-mail : rinkman@kca.kr

(붙임1)

부대품(소모품) 및 안전장구류 납품장소

구 분	주 소	연락처
본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사관리팀	061-350-1575
서울본부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2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02-2142-2024
북서울본부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0층(상암동16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	02-3151-9900
부산본부	부산 동구 초량중로 29(초량1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6
경인본부	인천 남동구 미래로 7(구월동 1128-10) 현대해상빌딩 4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032-442-8701
충청본부	대전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24(탄방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	042-602-0114
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19(치평동 124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목포지사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55 명진빌딩 2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여수지사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7(문수동 111-2) KT북부여수지점 2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청수로 66(상동 6-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한화생명 7층(죽도동 49-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지사	054-282-2368
전북본부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79(인후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	063-244-1116
강원본부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5-1 2층(무실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55(교동) 청호아ネ스 빌딩 6층 601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지사	033-646-9751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65(이도2동) 7층(이도이동 1034-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지사	064-752-0386

- 4 -

(붙임2)

본부별 안전장구류 배부수량

구분	품목	본사	서울	북서울	부산	경인	충청	전남	목포	여수	경북	포항	전북	강원	강릉	제주	합계
❶	전체식 안전벨트	0	10	7	22	3	1	0	2	3	5	2	5	1	2	6	69
❷	안전조끼	30	28	27	32	22	28	8	5	4	17	3	12	7	4	6	233
❸	안전모	0	10	0	15	1	0	0	4	4	6	2	4	0	0	2	48
❹	안전각반	0	28	27	32	22	28	8	5	4	17	3	12	7	4	6	203
❺	쿨토시	0	28	27	32	22	28	8	5	4	17	3	12	7	4	6	203
소요내역		30	104	88	133	70	85	24	21	19	62	13	45	22	14	26	756